

도 보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6-36 호

2016년 8월 1일 (월)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Namdo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061)286-2073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4091호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92호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93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94호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95호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96호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97호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4098호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규 칙

전라남도 규칙 제3101호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규칙 제3102호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규칙 제3103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훈 령

전라남도 훈령 제1365호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 규정 폐지규정
----------------	--------------------------

제30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8. 1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91호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요금은 「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 시행규칙」”을 “요금은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를 “품질시험·검사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
2. 품질시험·검사 실시하기 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 반환
3.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이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 미 반환.

제3조제2항 중 “전라남도수입증지로 징수 한다”를 “전라남도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8. 1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92호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조례의”를 “조례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어린이 :”를 “어린이:”로, “이하 인 자를”을 “이하인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 :”를 “청소년:”로, “자와”를 “사람과”로, “학생증을”을 “학생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군인 :”를 “군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른 :”를 “어른:”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노인 :”를 “노인:”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단체 :”를 “단체:”로, “입 장하는”을 “입장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입장료 :”를 “입장료:”로, “자로부터”를 “사람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시설사용료 :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설사용료: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점용료 :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경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칙”을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본문 중 “도지사”를 “전라남도지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7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3조의 규정에 따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관 리”를 “관리”로 한다.

제3조 중 “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로 하여금 행하게”를 “가 하도록”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 를 “위원 중에서”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인” 을 “2명” 으로, “그밖의” 를 “그 밖의” 로, “풍부한자” 를 “풍부한 사람” 으로, “자로” 를 “사람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 는 “각 호의 사람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군수” 를 “부시장·부군수”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를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원구역내에” 를 “공원구역 안에” 로, “위촉한 자” 를 “위촉한 사람”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인을 위원중에서” 를 “1명을 위원 중에서”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간사등)” 을 “(간사 등)” 으로 한다.

제11조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라남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한다.

제13조 앞의 “제4장 비용의 징수 등” 을 “제3장 비용의 징수 등” 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입장료)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14조의1” 을 “제14조의2” 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며, “자에” 를 “사람에” 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하고, 제5호와 제6호 중 “의하여” 를 각각 “따라” 로, “1인” 을 각각 “1명” 으로 하고, 제8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제9호와 제14호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하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로 하고, “의한” 을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허가의” 를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점용료등의 징수)” 를 “(점용료 등의 징수)” 로 하고, 제16조제1항 중 “의하여” 를 각각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매1월” 을 “매 1월”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분” 을 “해당 연도분” 으로, “당해연도 개시후” 를 “해당 연도 개시 후” 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점용료등의 감면)” 을 “(점용료 등의 감면)” 으로 하고, 제17조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8조의2 중 “만료전에” 를 “만료 전에” 로 한다.

제18조의4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명개정 2008. 9. 26) 이미” 를 “이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거” 를 “따라” 로, “의한” 을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연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를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한다.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시장·군수간의” 를 “군수 간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원간에” 를 “공원 간에” 로, “차등지원 할” 을 “차

등 지원할”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시장·군수)간에” 를 “(군수) 간에” 로 하고, 같은 호 “단,” 을 “다만,” 으로 하고, 단서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4,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원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조계산도립공원	순천시 승주읍, 송광면, 낙안면, 주암면 일원
두륜산도립공원	해남군 삼산면, 현산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일원
천관산도립공원	장흥군 관산읍 일원
신안갯벌도립공원	신안군 압해읍, 지도읍, 증도면, 비금면, 도초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암태면, 안좌면 일원
무안갯벌도립공원	무안군 현경면, 해제면 일원
별교갯벌도립공원 (신설 2016. 1. 28.)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대포리, 호동리, 장암리, 영등리 주변 해면 일원

[별표 4]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 기준표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기 준 요 율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50/100
2. 토지의 개간	수확 예상액의 25/100이상
3.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상 징수 금액의 10/100 이상

[별지 제2호서식]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공원의명칭				
⑤공원시설의종류				
⑥공원시설물의위치				
⑦징수하고자하는사용료액				
⑧징수방법				
⑨징수기간		. . . 부터 . . . 까지 (간)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공원사업시행 및 시설관리허가서 사본 : 2부 2. 수지에산서 : 2부				수수료

[별지 제3호서식]

도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허가에 관한 게시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사용료 징수자)

사용료 징수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공 원 의 명 칭				
⑤공원시설의 종류				
⑥공원시설물의 위치				
⑦사 용 료 징 수 액				
⑧징 수 기 간				
⑨허 가 관 청	. 부터 (간) . 까지			
⑩허 가 년 월 일				

190mm×268mm
(신문용지 54g/m)

제30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8. 1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93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사채등록법」” 을 “「공사채등록법」”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기준 금리로 하되, 연복리를 적용한다.

제6조제4항 중 “30범위 내” 를 “50 범위” 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월” 을 “1개월” 로 한다.

제17조 중 “우선순의” 를 “우선순위” 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1%” 를 “1퍼센트”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8. 1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94호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인·단체”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로서, 「민법」·「상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
2. “지역작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광주전남에서 출생하거나 초등교육 또는 중등교육을 이수한 자
 - 나. 광주전남 지역 대학(원)의 미술 관련학과를 재학 또는 졸업한 자
 - 다. 광주전남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자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도권 전시공간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 전시공간(이하 “갤러리”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갤러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에 그 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의3(대관) 갤러리를 대관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갤러리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갤러리 대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관을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대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대관의 취소 또는 전시의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3. 대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 및 갤러리의 관리·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제3조의4(대관료) ① 갤러리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관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전남 고유의 관광지·풍경·건물을 대상으로 한 전시
2. 전남 출신 역사적 위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전시
3. 전남 고유의 역사 또는 전통을 대상으로 한 전시
4. 전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전시

③ 대관료는 대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5(위약금) 갤러리 대관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갤러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별표 2의 위약금을 부담한다.

제3조의6(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갤러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별표 1]

갤러리 대관료(제3조의4 관련)

구 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 고
광주전남 지역작가	7일 (1일 8시간 기준)	1,000,000 ※ 연장시 1일당 150,000원 추가	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기타 지역작가	7일 (1일 8시간 기준)	3,000,000 ※ 연장시 1일당 450,000원 추가	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 별지 2 >

[별표 2]

갤러리 위약금(제3조의5 관련)

구 분	사용료(원)	위약금	비 고
대관 허가를 받은 후 대관 사용일 30일 전	1,000,000 ※ 연장시 1일당 150,000원 추가	사용료의 10%	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3,000,000 ※ 연장시 1일당 450,000원 추가		
대관 허가를 받은 후 대관 사용일 30일 이내	1,000,000 ※ 연장시 1일당 150,000원 추가	사용료의 50%	부가세, 공공요금 포함
	3,000,000 ※ 연장시 1일당 450,000원 추가		

< 별지 3 >
[별지 제1호서식]

대관 허가 신청서(제3조의3 관련)

단 체 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또는 대표자주소					연락처	자택	
						직장	
행사명칭							
행사내용						작품수	
대관기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간)					작품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작품반출기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전시실 (m ²)					
	부속설비	냉·난방설비	유 무				
		기자재	마이크, 비디오프로젝트, TV, 피아노 동시통역시설, 릴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대관료	총계		기본시설요금		냉난방요금		기자재사용요금
	원		원		원		원
관람요금	유료 : 무료 :						
시설사용조건	갤러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대관허가 신청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대관허가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업무처리에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후 5년간 보관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업무처리 불가 ※ 개인정보는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인)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대관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제30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8. 1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95호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

전라남도 도기

(1) 도기모양(색상)



- 전라남도 황금색
- PANTONE 116C (M14 Y100)
- 전라남도 주황색
- PANTONE 7578C (M67 Y100)
- 전라남도 녹색
- PANTONE 77C (C97 Y86 K15)
- 전라남도 파란색
- PANTONE 300C (C99 M50)

(2) 도기의 의미

가. 형 태

심별마크는 전라남도의 대표적 특징인 황금들판과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태양, 녹색 자연, 푸른바다를 표현했으며, 황금색을 주색으로 풍요로움을 강조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된 조화로운 곡선은 전통과 예술 속에 열림과 소통으로 정감 넘치는 전남인의 정서를 상징한다.

나. 내용설명

- 사각 바탕의 찬란한 ‘황금색’은 기름진 황금 들판과 희망을 담은 대지의 풍요로움을 상징함.
- 상단의 ‘붉은 원’은 영원한 생명력의 상징인 태양으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녹색 잎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역동적이고 희망적으로 표현해 생기 넘치는 도민의 따뜻한 온정을 상징함.
- 리듬감 있는 곡선 형태의 ‘녹색 잎’은 천혜의 자연 보고로서 친환경적으로 성장 진화하는 아름다운 전라남도를 나타냄.
- 역동적인 곡선의 ‘푸른 물결’을 통해 해양 지향적 발전과 미래를 향한 도민의 힘찬 도전 정신과 활력 있는 젊은 기상을 나타냄.
- 중앙의 잎과 하단부 물결의 조화로운 곡선은 전통과 예술 속에 살아 숨 쉬는 전남인의 부드럽고 넉넉한 정을 표현함.
- 바탕의 흰색은 도민의 맑고 깨끗한 순수함을 의미함.

(3) 도기의 규격



※ 위 규정은 비례규정이며, 영문 도기 제작 시에도 위 규정에 따른다.

호 수	깃면의 표준규격 (길이×너비)	비 고
특호	306cm × 204cm	※ 건물 게양용은 특호, 1호, 2호 적용
1호	270cm × 180cm	
2호	225cm × 150cm	
3호	180cm × 120cm	
4호	153cm × 102cm	
5호	135cm × 90cm	
수기	27cm × 18cm	

(4) 금실의 부착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깃 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 각종 국제회의 시에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나. 금실의 폭은 깃 면 너비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 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5) 도기의 게양

가. 도기는 도와 공동단체의 청사 또는 도민 행사장에 게양한다.

나. 게양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심벌마크 문장형

기본형



응용형



※ 전라남도의 권위와 위상을 상징하는 요소로써 품위나 품격을 나타내고자 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활용범위는 금, 은, 엠보싱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적용매체에 따라 기본형과 응용형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7) 시그니처 좌우조합

국문



영문



국·영문 혼용



『별지 2』

[별표 2]

슬로건

생명의땅 전남
Full of Life, Jeonnam

(1) 슬로건의 의미

‘생명의 땅 전남’은 전남을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기지’이자, 쉬고 즐기며 치유하는 ‘생명의 힐링 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도정비전이며, 나아가 전남을 ‘삶의 전 영역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매력 있는 지역’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슬로건은 한글을 중심으로 표기하고 영문은 하단에 부기(附記)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강조하였다.

(2) 응용사례

한글, 영어 혼합형	응용형
 	
한글형  	

『별지 3』

[별표 3]

캐릭터



※ 캐릭터의 응용은 캐릭터 매뉴얼에 따른다.

(1) 캐릭터의 의미

전라남도의 캐릭터로 ‘남도와 남이’를 커플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전라남도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한복을 입고 두 팔을 벌려 누군가를 반기는 듯한 소년 소녀의 형상으로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표현했다. ‘남도와 남이’는 심벌의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화 하였는데 한복 상의는 도민의 따뜻한 온정을 상징하고 연두색 하의는 수려하고 깨끗한 자연을 바탕으로 성장 발전하는 전라남도 친환경산업을 상징한다. 또한 ‘남도’의 이마 부분엔 심벌의 나뭇잎을, ‘남이’의 이마 부분엔 도화(道花)인 동백꽃을 달고 있어 천혜의 자연보고로서 아름다운 전라남도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커플로 표현된 캐릭터는 아름다운 만남과 화합을 의미한다.

제30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8. 1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96호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며,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 다. 행정자치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정하는 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2. 도의회사무처
3.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 누리집 등에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품목별 구매 목표액 및 목표율 등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구매율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도지사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에 포함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을 도 누리집과 도보 등에 매년 3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 및 계약부서에서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구매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8. 1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97호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범위로 제한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7. 15.)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 8. 1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4098호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라남도(이하 “도”를 “전라남도(이하 “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지명하는”을 “지명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지사가 제정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⑥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기술심의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3분의 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한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100억원이상인”을 “100억원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억원이상인”을 “100억원 이상인”으로, “허가등을”을 “허가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호 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

항 의 규정에 의한”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4조제6항에 따른” 으로, “공법등의” 를 “공법 등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 이상” 을 “10퍼센트 이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부 의하는” 을 “회의를 부치는”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1,000억원미만의” 를 “1,000억원 미만의” 로, “6일 이내” 를 “6일 이내”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0억원이상” 을 “1,000억원 이상” 으로, “7일 이내” 를 “7일 이내”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 를 “10퍼 센트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 로, “3일 이내” 를 “3일 이내”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으로 하여금” 을 “위원에게” 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년도” 를 “해당연도” 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지침서 등” 을 “지침서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을 “관계공무원에게” 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와 제36조에” 를 “때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9조와 제31조에” 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심의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부서장은 그 내용 중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조치결과를 착공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소위원회등)” 을 “(소위원회 등)” 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 중 “하되, 주공종분야는 2인이상 위원이 참석한다” 를 “하고, 심의안건의 주공종분야는 2명 이상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 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중에서” 를 “위원 중에서”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5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를 “제2항에도”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를 “영 제17조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를 “영 제17조제5항에” 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나·라·마 ·사·아목에서” 를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라·마·사·아목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다만” 을 “다만,” 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를 “영 제9조제6항에” 로 한 다.

제18조의 제목 “(출석수당등)” 을 “(출석수당 등)” 으로 하고,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을 “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시행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으로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청 령 서 약 서

심의안건명 :

본인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분 야 :

위원명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8. 1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규칙 제3101호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품질시험과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을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로, “정하지 아니”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로 한다.

제5조 중 “감독공무원”을 “감독 공무원, 책임 감리원”으로, “직접”을 “직접, 우편, 택배, 소포 등을 통하여”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시행규칙 제6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로, “도수입증지로 첨부하여야”를 “도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지정계좌로 납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경우에는 사업소장은 설계서에 의하여 시험비용을 산정하여 의뢰자와 협의하여야”를 “경우 현장출장경비는 매년 전라남도보에 고시하여야”로 한다.

제13조 중 “제9조제3항”을 “제56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8. 1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규칙 제3102호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상임지휘자, 사무장, 단원(지도위원, 수석, 상임, 일반, 비상임) 및 어린이국악단 객원지휘자”를 “예술감독, 부감독, 사무장, 단원 및 어린이국악단 객원예술감독, 지도교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직무대행)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1. 예술감독
2. 부감독
3. 각 부의 수석단원 중 최고 연장자

② 삭제

③ 삭제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공연연주교육등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공연연주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해”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원”을 “상임단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3의2”를 “별표 3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복리후생비라”를 ““복리후생비“라”로, “별표3의3”을 “별표 3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단원이 1월”을 “상임단원이 1개월”로, “신규위촉 및 해촉등”을 “신규위촉 및 해촉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상임지휘자에게 국악단 대외활동등을 고려하여”를 “국악단 대외활동

등을 위해 예술감독에게” 로 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4(공연수당)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게 공연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공연 및 수시 공연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5 중 “제11조 제5항” 을 “제13조제5항” 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하되” 를 “하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4” 를 “별표 4”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기간 동안”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처분 및 휴직 중에 있는 사람

제9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직: 12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출연정지: 6개월

제9조제5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견책: 6개월

제9조제7항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내에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정근수당을” 을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여비를” 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의3,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단원의 본봉 지급 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본 봉 지 급 기 준
예술감독	공무원 보수규정상 일반행정직 5급 본봉 상당액
사무장 및 부감독	공무원 보수규정상 일반행정직 6급 본봉 상당액
근무기간 5년 이상	공무원 보수규정상 일반행정직 7급 본봉 상당액
근무기간 5년 미만	공무원 보수규정상 일반행정직 8급 본봉 상당액

[별표 3의3]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제8조제1항제4호 관련)

구 분	지급기준
정액급식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가족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별표 6]

업무추진비 지급기준(제8조의3 관련)

(단위 : 원)

지급대상	예술감독	비 고
지급액	800,000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 8. 1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규칙 제3103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1.5퍼센트”를 “1.25퍼센트”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융자금의 이율)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채 및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지역개발공채 매입증서

증서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매 입 일 :

매입금액 :

입금증권회사 :

매출은행장

직인

발행지점장 :

직인

(문의처 : Tel

)

(크기 : 210mm×148.5mm, 지질 : OCR110g/m²)

<후면>

지역개발공채 매입 약관

1. 이 증서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자에게 교부한다.(분실시 재교부 가능)
<공개발행조건>
 - 공채의 발행일 : 매월 말일(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일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선급함)
 - 공채의 상환 : 5년거치후 원리금 일시상환(이율 : 연 %복리)
 - 채권소멸시효 :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
2. 이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시는 그 효력이 없으며, 입금증권회사와 공채매입자간 실명확인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이 공채를 중도매도하거나 질권 설정 또는 만기상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도장(또는 서명)과 주민등록증(가족의 경우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앞면의 증권회사에 개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단, 최초매입자가 중도 매도 없이 만기까지 보유한 공채에 대하여는 당해 매출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이 공채는 매도주문대행계약과 증권거래소의 제규정에 따라 증권거래 시장을 통해서만 중도매도할 수 있다.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 8. 1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훈령 제1365호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 규정 폐지규정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지구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